장애인학대상담 및 신고

1644-8295

가까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발행처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인 은종군

편집인 김정혜, 김현정, 이미현, 이정민

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 5차 1205호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누리집 www.naapd.or.kr **발행일** 2019.09

07330

9 791185 498751

ISBN 979-11-85498-75-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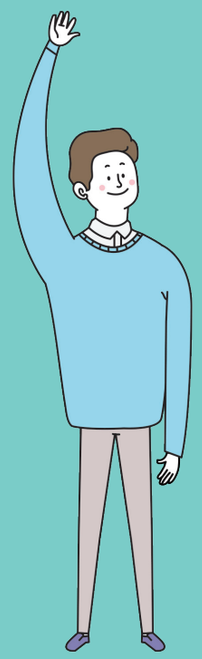
Ⅰ. 장애란?
장애의 정의
장애개념의 세계적 추세
장애유형

Ⅱ.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의 유형

Ⅲ.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Ⅳ.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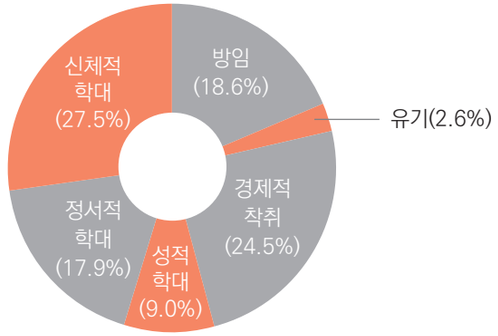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전체 신고접수 **3,658**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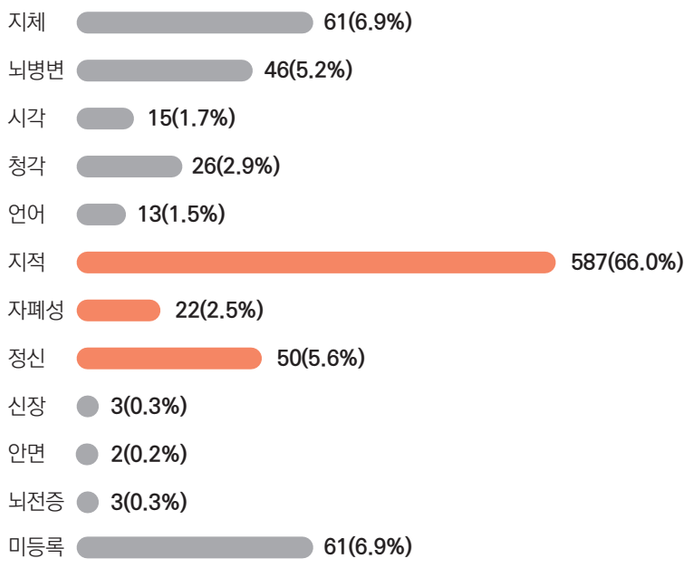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 학대 포함)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
(주장애 기준)

● 피해 장애인의 **74.1%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Ⅰ. 장애란?

장애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환경적 장벽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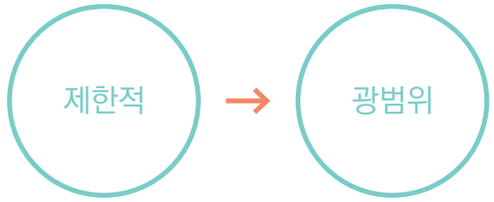
※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제1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문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장애개념의 세계적 추세

- 장애를 규정하는 모델은 개별적 손상이나 능력의 장애를 강조하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구조 혹은 사회환경의 관점으로 장애를 설명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동시에 설명하는 복합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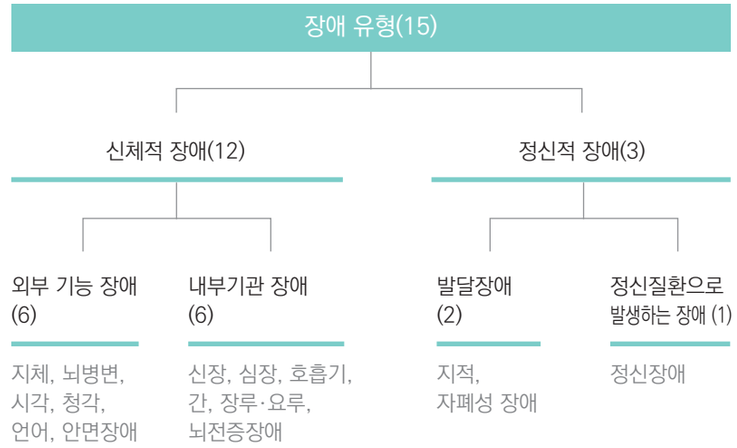
- 초기에는 장애로 인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인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표방하는 추세에 부합하여 장애의 개념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보면, 과거 의학적·생물학적인 측면(제한적)에서 장애를 바라보던 것에서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요인이 결합된 새로운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폭넓은 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나뉘며, 이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유형, 신체적 장애는 나머지 12가지 유형이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능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로 나누며, 정신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나눈다.



Ⅱ.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괴롭힘 등*' 개념에서 학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학대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등에서 장애인학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학대의 유형

- 장애인학대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똑바로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과도한 양의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
- 화상·동상을 입히는 행위
- 체벌, 기합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투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포 또는 감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폭언, 협박, 조롱, 비하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 종교적 행위 강요
-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준다면 성적 학대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성적 학대로 보기에 애매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다.

대표행위

- 성추행, 성폭행
- 성희롱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성희롱 · 성폭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노동력 착취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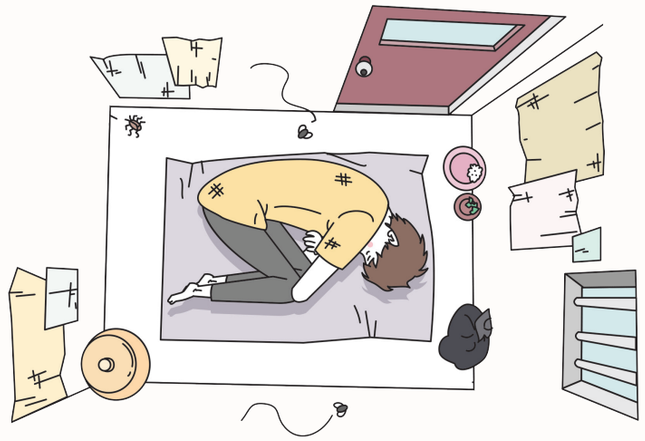
- **폭행 · 협박 · 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 방임

유기 · 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대표행위

- 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기본적인 교육 · 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유기 ·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내용	벌칙
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의2호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호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호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신체적 학대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B씨(뇌병변장애)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돕던 중 B씨의 등과 팔에 멍이 들고,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씨가 상처에 대해 물어보자 B씨는 대답하기를 꺼려하다가 '부딪혔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의 몸에 새로운 상처가 생긴 것을 보고 조심스레 다친 경위를 물었고, B씨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설득했다. B씨의 상처는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라 B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하여 생긴 것이었다. 이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인 A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가정폭력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지적장애)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불러낸 후 자신의 집에 가두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B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B씨를 때리고, 담뱃불로 B씨의 몸에 화상을 입혔다. A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쳐 나온 B씨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들은 A씨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B씨는 병원치료를 받았고,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집에 가두고,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때리고,
담뱃불로 몸에 화상을 입힌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

신체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피해장애인의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부상이 있는 경우
- 체벌이나 구속, 결박의 흔적
- 오래된 상처가 낫기 전에 생긴 새로운 상처의 흔적
-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포의 표현

정서적 학대

온라인 개인방송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방송에 B씨(지적장애)를 출현시켜 “일반인보다 덜떨어진”, “길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 “덜떨어진 X” 등 모욕적인 발언과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B씨는 손님인 A씨(시각장애)와 운행경로 문제로 다투다가 “XX, 내가 불친절한 것인지, 손님이 X같은 건지. XXX이 너 내려놓고 갈까”라고 A씨를 위협하였고 결국에는 소리를 치며 A씨를 도로 중간에서 내리게 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B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장애인을 협박하고 도로 중간에서 내리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

정서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 대한 회피, 거부, 지나친 긴장
-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 자살충동
- 과도하게 순응적인 태도, 낮은 자존감
- 갑작스런 행동 변화

성적 학대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씨(지적장애)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 B씨가 반복해서 ‘싫다’고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옷을 벗게 한 후 B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B씨는 심리상담과 병원치료를 받았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성추행’은 성적 학대에 해당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C씨(지적장애)를 자신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등에 데리고 가서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 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A씨와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A씨는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B씨는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성폭행, 성추행’은 성적 학대에 해당

성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성적 학대를 나타내는 신체적 흔적
- 찢어지거나 얼룩지거나 피가 묻은 옷
- 성적 행동의 변화, 성적 행위의 반복적 표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과 행동(미성년의 경우)

경제적 착취

B씨(지적장애)는 식당에서 12년간 숙식을 하며 식당의 허드렛일을 도맡아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 A씨는 월급을 주지 않았고, 대신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힘든 일도 참고 견뎠으나, 집을 사주기는커녕 제대로 된 월급조차 받지 못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B씨는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며,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에 해당

A씨는 이웃인 B씨(지적장애)에게 접근하여 수급비 등 생활비를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통장을 받은 후 통장에 있던 돈을 찾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경제적 착취에 해당

경제적 착취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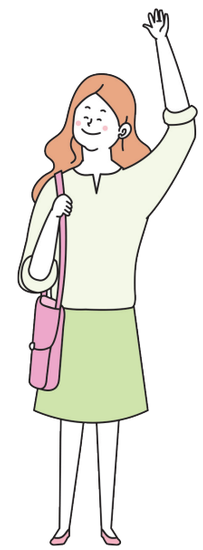
-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않음
- 정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음
-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미납된 청구서
-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지출, 금융거래, 대출내역

유기·방임

B씨(자폐성장애)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어느 날 보호자 A씨는 더 이상 힘들어서 B씨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

'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유기·방임에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 A씨는 이용자들에게
수차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과 곰팡이가 핀 음식을 제공하였다.



장애인학대신고 이후,

원장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10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는 유기·방임에 해당

유기·방임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저체중, 전신 쇠약,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
- 부적절한 거주환경
- 본인의 신체, 의복, 주거공간의 위생상태 불량
- 보호의무자와 연락단절(유기)
- 보호의무자의 치료 및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표시(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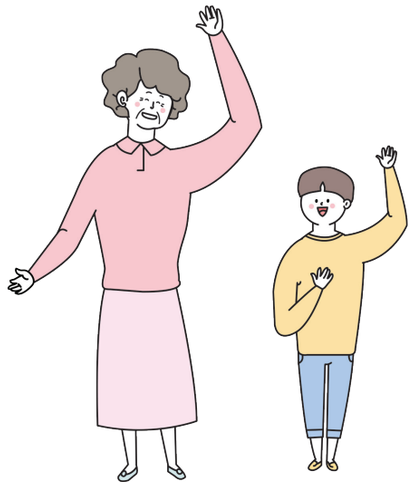
Ⅳ.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1644- 8295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학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을 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장애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 장애인을 긴급하게 행위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되거나 즉시 의료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학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되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피해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사례 개입과정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접수 *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피해자, 행위자 관련)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됨
↓	
학대조사	2인 1조,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필수조사 /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자는 필요시 조사) * 필요시 응급조치
↓	
사례판정	사례회의를 통한 판정 * 필요시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판정
↓	
피해자 지원	피해 장애인의 의사와 욕구를 존중 /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 (지원의 범위나 방식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음)
↓	
사례종결	피해자 지원이 완료된 경우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사후 모니터링 실시

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모든 정보를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속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장애인학대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피해자 관련정보** : 피해 장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장애등급, 장애정도, 연락처 등)
    : 피해 장애인의 현재 상황(안전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학대 관련정보** : 학대의 구체적 내용(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심자, 최초 발생시점, 지속기간, 학대의 지속 여부 등)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파면, 해임, 해고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전근, 집단따돌림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제1호)
  -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5차 1205호(가산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부산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층(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세종 한누리대로 2143, 금강시티타워 604호(보람동)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민락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9, 팰리스피아 110호(두정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효자동3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전남 목포시 영산로633, 세븐에이치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이도이동)